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부부 [] 직계존비속(관계:) [] 그 밖의 관계()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종류:)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소계	원
① 자금 조달계획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미보유 [] 보유 (건)			
	⑨ 임대보증금	원	⑩ 회사지원금·사채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 부부 [] 직계존비속(관계:) [] 그 밖의 관계()			원
⑬ 합계			원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원
	⑮ 계좌이체 금액	원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원
지급 사유 ()		

⑱ 입주 계획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임대 (전·월세)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7항·제9항·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분양대금+발코니확장공사비+추가선택품목 금액의 합이 6억이상인 계약자만 해당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소(법인소재지)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기재	(휴대)전화번호 당첨자 본인의 연락처 기재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으로 조달하는 금액(본인 명의의 예금(적금) 등)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당첨자 본인 명의의 주식, 채권,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④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회수 등 이에 준하는 자금 기재 원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④번에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모든 자와의 관계 기재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 후 기재)	[] 보유 현금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현금이 아닌 자산종류 기재)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타 부동산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⑦ 소계 ②+③+④+⑤+⑥ 합계 금액 원	
① 자금 조달계획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 대출금액 합계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합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그 밖의 대출금) 원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실행시 작성금지 원	
		신용대출 마이닝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자금 기재 원	
		그 밖의 대출 금회 중도금 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회 중도금 집단 대출시 당첨된 동호수 분양가의 60%) (대출 종류 : 예) 중도금집단대출 원	
	위의 주택 담보대출 금액 기재시에만 작성(중도금 대출 실행시 작성금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미보유 [] 보유 (건)	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조달 하는 경우 보유에 체크 후 건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모두 기재(건수에 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분양권 및 입주권, 부부 공동명의 지분소유 포함하여 기재) 예) 무주택자의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후에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면 미보유에 체크	
	⑨ 임대보증금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	⑩ 회사지원금·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사용 시 기재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 시 금액 기재 원	⑫ 소계 ⑧+⑨+⑩+⑪ 합계 금액 원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⑪번 해당시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 기재			
⑬ 합계	※ ⑦+⑫ [총금액] 당첨된 동·호수의 공급금액+발코니확장금액+추가 선택품목 금액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 원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당첨된 동·호수의 공급금액+ 발코니확장금액+추가 선택품목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 원	
	⑮ 계좌이체 금액	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당첨된 동·호수의 공급금액+ 발코니확장금액+추가 선택품목의 합계와 동일하여야 함) 원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원	
	지급사유 ()		
⑱ 입주 계획	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 2025년 07월)	⑲번항목 기재시 필수 체크 [] 임대 (전·월세)	작성 금지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날짜 작성금지

년 월 일

제출인

당첨자 본인 서명 기재

(서명 또는 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6억이상 주택 거래시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6억이상 주택 기준 : 분양대금 + 발코니확장공사비 + 추가선택품목 금액 포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정확한 작성을 위해 연필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상세항목	세부내용	
자 기 자 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중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차 입 금 액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 밖의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 체크, 보유란에 √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현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 주 계 획	본인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입 주 계 획	계좌이체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증금·대출금 승계	기존 대출금·임대차 보증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현금 등 기타지급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